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1

제출일자: 2015. 11. 10.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 정비(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 기존의 지원 대상인 "수급자"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 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16. ~ 11. 5.)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급자"를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② (생 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생 략) 1. (생 략) 2. <u>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 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관련 연간 소요예산은 23,5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이창호

사회복지과장 최종헌